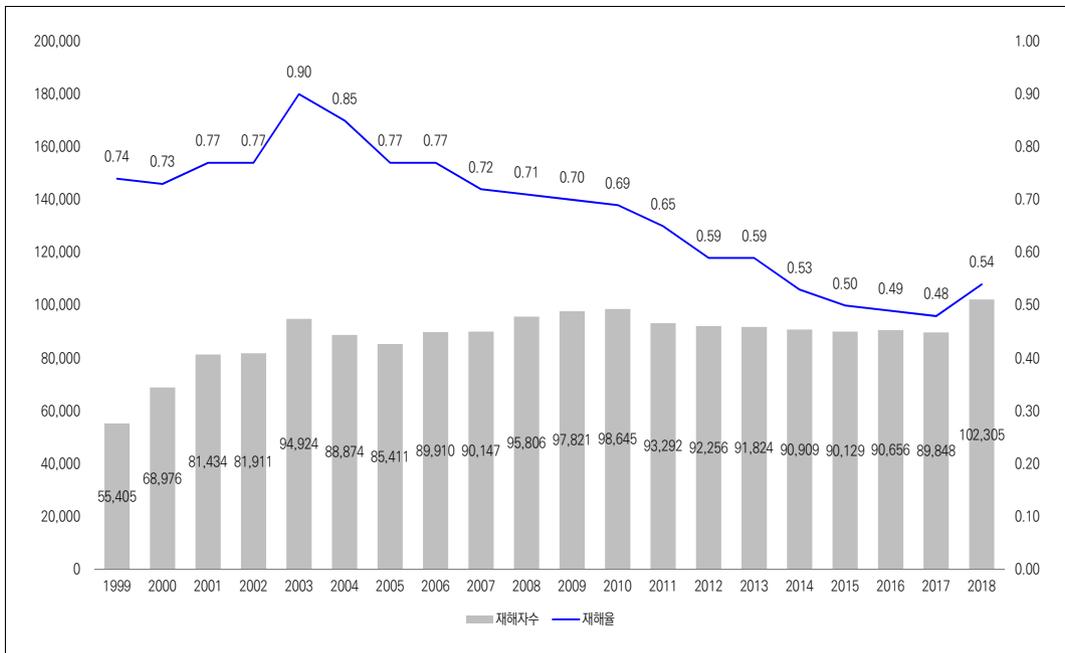


산업재해율 추이 및 현황

-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1999년 0.74%에서 2018년 0.54%로 최근 20년 동안 감소하였으나 산업재해자 수는 102,305명으로 증가하였음.
 - － 산업재해율은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0.70%대를 유지한 이래, 2010년부터 0.69%가 되었으며 이후 0.50% 수준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임.1)

[그림 1]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 및 산업재해율 추이

(단위 : 명, %)



주 : 재해율은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연도.

1) 2003년과 2004년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집단요양신청이 증가하여 산업재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근 10여 년 산업재해 증가원인 분석』).

- 재해자 수는 2018년 102,305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부터 추진한 추정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²⁾ 등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해자 인정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재해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 제조업에서 36.66%, 27.06%, 26.76%가 발생하였으며, 재해자의 78.3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였음.

〈표 1〉 우리나라 산업별 산업재해를 비교(2017년, 2018년)

(단위 : 명, %)

	2017년			2018년			재해자 수 증감 (증감률)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전 체	18,560,142	89,848 (100.00)	0.48	19,073,438	102,305 (100.00)	0.54	12,457 (13.86)	
산업 별	광업	11,199	1,897 (2.11)	16.94	11,697	2,225 (2.17)	19.02	328 (17.29)
	제조업	4,149,966	25,333 (28.20)	0.61	4,152,058	27,377 (26.76)	0.66	2,044 (8.07)
	건설업	3,046,523	25,649 (28.55)	0.84	2,943,742	27,686 (27.06)	0.94	2,037 (7.9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5,496	87 (0.10)	0.12	76,967	108 (0.11)	0.14	21 (24.14)
	운수창고통신업	838,006	4,237 (4.72)	0.51	873,232	5,291 (5.17)	0.61	1,054 (24.88)
	임업	82,773	1,124 (1.25)	1.36	89,751	1,041 (1.02)	1.16	-83 (-7.38)
	어업	5,289	59 (0.07)	1.12	5,416	66 (0.06)	1.22	7 (11.86)
	농업	76,033	555 (0.62)	0.73	83,540	648 (0.63)	0.78	93 (16.76)
	금융 및 보험업	764,141	312 (0.04)	0.35	778,105	358 (0.35)	0.05	46 (14.74)
기타의 사업	9,510,716	30,595 (34.05)	0.32	10,058,930	37,505 (36.66)	0.37	6,910 (22.59)	
규모 별	5인 미만	2,813,885	29,597 (32.94)	1.05	3,030,676	32,568 (31.83)	1.07	2,971 (10.04)
	5~49인	8,069,832	42,929 (47.78)	0.53	8,306,786	47,554 (46.48)	0.57	4,625 (10.77)
	50~99인	1,921,118	6,066 (6.75)	0.32	1,971,076	7,116 (6.96)	0.36	1,050 (17.31)
	100~299인	2,500,364	5,408 (6.02)	0.22	2,510,402	7,217 (7.05)	0.29	1,809 (33.45)
	300~999인	1,700,950	3,145 (3.50)	0.18	1,701,468	4,500 (4.40)	0.26	1,355 (43.08)
	1,000인 이상	1,553,993	2,703 (3.01)	0.17	1,553,030	3,350 (3.27)	0.22	647 (23.94)

주 : 1) ()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산업별, 규모별 비중임.

2) 기타의 사업에는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추정치 원칙(2017년 9월): 작업기간·노출량 등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함.
사업주확인제도 폐지(2018년 1월):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를 폐지함.
적용사업장 확대(2018년 7월):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총 39,740개소)

-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37,505명으로 재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27,686명)과 제조업(27,377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2,568명, 5~49인에서 47,554명으로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2019년 1월 15일 김용균 법(산업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확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 수준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재해자 수와 산업재해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나 배달노동자처럼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하여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이 기존 수준보다 강화됨에 따라³⁾ 향후 재해자 수와 산업재해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음(기계신문, 2019. 1. 15일자).